

김해 장신대역 양우내안에 입주자 모집공고(안)

목 차

1.	인터넷/모바일 청약서비스 안내	-----	1
2.	공급위치 및 공급면적	-----	1
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2
4.	특별공급	-----	4
	1) 특별공급-일반 특별공급	-----	4
	2) 특별공급-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	-----	4
	3) 특별공급-다자녀 특별공급	-----	4
	4)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	6
	5)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6
	6)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6
	7)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7
5.	일반공급	-----	8
	1)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8
	2)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	9
	3) 청약 접수기간 및 장소	-----	9
	4)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9
6.	신청접수 방법	-----	10
	1) 특별공급	-----	10
	2) 일반공급	-----	10
	3) 청약신청 접수 유의사항	-----	10
6.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10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10
	2) 가점접수 산정기준표	-----	10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11
	4) 감점 산정기준	-----	12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2
	6) 소형·저가주택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	13
7.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	13
8.	공급 신청시 구비 사항	-----	13
9.	3순위 청약신청금	-----	13
10.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14
11.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14
12.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14
13.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14
14.	인터넷/ARS/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15
15.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15
16.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15
17.	계약시 구비서류	-----	15
18.	계약조건	-----	16
19.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6
20.	중도금 대출안내	-----	17
21.	입주자 사전점검 방법	-----	17
22.	입주 예정일	-----	17
23.	부대복리시설	-----	18
24.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	18
25.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관련 사항	-----	18
2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18
27.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	-----	18
28.	기타 유의사항	-----	19
29.	설계관련 유의사항	-----	19
30.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20
31.	연대보증사-대한주택보증(주)/보증약관	-----	20
3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21
33.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21
34.	건본주택 위치	-----	21

김해 장신대역 양우내안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안)

-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김해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이므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견본주택에서는 73.5277㎡, 82.5343(B)㎡, 84.5330㎡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63.5015㎡, 65.5418㎡ 및 82.1272(A)㎡ 주택형은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 본아파트는 2007. 9. 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므로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서비스 안내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포함)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2순위에 한함)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2순위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김해시 건축과 - 20329호 (2011.06.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374-4번지 외 30필지

□ 대지면적 : 14,336.60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3층~18층, 5개동 총 3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총 306세대 중 특별공급 102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27세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급되는 특별공급 27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12세대, 신혼 부부 특별공급 27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9세대)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1) 공급면적 및 세대수

(면적단위 : ㎡)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동별 세대지분	동별	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세대별			
민영 주택	2011000599-01	63.5015	63.5015	20.6609	84.1624	22.4246	106.5870	37.6200	102동	36	
	2011000599-02	65.5418	65.5418	21.0444	86.5862	23.1451	109.7313	38.8288	102동	31	
	2011000599-03	73.5277	73.5277	22.9763	96.5040	25.9652	122.4693	43.5598	101동, 104동	69	
	2011000599-04	82.1272(A)	82.1272	25.2347	107.3619	29.0020	136.3639	48.6544	103동, 104동	29	
	2011000599-05	82.5343(B)	82.5343	25.8974	108.4317	29.1458	137.5775	48.8956	103동, 104동	72	
	2011000599-06	84.5330	84.5330	25.9968	110.5298	29.8517	140.3814	50.0797	103동, 105동	6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09.04.01)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여 청약신청 바람.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면적-m²,세대,금액-원)

주택형 (m ²)	동 구분	층별 구분	세대수	공급가격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5%)	2차(15%)	3차(15%)		4차(15%)
									(2011. 10. 20)	(2012. 03. 20)	(2012. 08. 20)		(2012. 12. 20)
63.5015	102동 2호	1층	1	31,886,301	120,113,669	152,000,000	15,2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45,600,000	
		2층	1	31,886,301	123,113,669	155,000,000	15,500,000	23,250,000	23,250,000	23,250,000	23,250,000	46,500,000	
		3층	1	31,886,301	126,113,669	158,000,000	15,8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47,400,000	
		4층	1	31,886,301	129,113,669	161,000,000	16,100,000	24,150,000	24,150,000	24,150,000	24,150,000	48,300,000	
		5-10층	6	31,886,301	133,113,669	165,000,000	16,500,000	24,750,000	24,750,000	24,750,000	24,750,000	49,500,000	
		11-최상층	8	31,886,301	137,113,669	169,000,000	16,90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50,700,000	
	102동 3호	1층	1	31,886,301	123,113,669	155,000,000	15,500,000	23,250,000	23,250,000	23,250,000	23,250,000	46,500,000	
		2층	1	31,886,301	126,113,669	158,000,000	15,8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47,400,000	
		3층	1	31,886,301	129,113,669	161,000,000	16,100,000	24,150,000	24,150,000	24,150,000	24,150,000	48,300,000	
		4층	1	31,886,301	132,113,669	164,000,000	16,4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49,200,000	
		5-10층	6	31,886,301	136,113,669	168,000,000	16,8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50,400,000	
		11-최상층	8	31,886,301	140,113,669	172,000,000	17,2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51,600,000	
65.5418	102동 4호	1층	1	32,910,807	127,089,193	160,000,000	16,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48,000,000	
		2층	1	32,910,807	130,089,193	163,000,000	16,300,000	24,450,000	24,450,000	24,450,000	24,450,000	48,900,000	
		3층	1	32,910,807	133,089,193	166,000,000	16,6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49,800,000	
		4층	1	32,910,807	136,089,193	169,000,000	16,90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50,700,000	
		5-10층	6	32,910,807	140,089,193	173,000,000	17,300,000	25,950,000	25,950,000	25,950,000	25,950,000	51,900,000	
		11-최상층	3	32,910,807	144,089,193	177,000,000	17,70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53,100,000	
	102동 1호	1층	1	32,910,807	127,089,193	160,000,000	16,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48,000,000	
		2층	1	32,910,807	129,089,193	162,000,000	16,2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48,600,000	
		3층	1	32,910,807	131,089,193	164,000,000	16,4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49,200,000	
		4층	1	32,910,807	133,089,193	166,000,000	16,6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49,800,000	
		5-10층	6	32,910,807	136,089,193	169,000,000	16,90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25,350,000	50,700,000	
		11-최상층	8	32,910,807	139,089,193	172,000,000	17,2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51,600,000	
73.5277	101동 1,2호	2층	2	36,920,803	150,079,197	187,000,000	18,700,000	28,050,000	28,050,000	28,050,000	28,050,000	56,100,000	
		3층	2	36,920,803	152,079,197	189,000,000	18,900,000	28,350,000	28,350,000	28,350,000	28,350,000	56,700,000	
		4층	2	36,920,803	154,079,197	191,000,000	19,10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57,300,000	
		5-10층	12	36,920,803	157,079,197	194,000,000	19,4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58,200,000	
		11-최상층	16	36,920,803	160,079,197	197,000,000	19,700,000	29,550,000	29,550,000	29,550,000	29,550,000	59,100,000	
		104동 1,2호	1층	1	36,920,803	143,079,197	180,000,000	18,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54,000,000
	2층		2	36,920,803	145,079,197	182,000,000	18,2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54,600,000	
	3층		2	36,920,803	147,079,197	184,000,000	18,4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55,200,000	
	4층		2	36,920,803	149,079,197	186,000,000	18,6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55,800,000	
	5-10층		12	36,920,803	152,079,197	189,000,000	18,900,000	28,350,000	28,350,000	28,350,000	28,350,000	56,700,000	
	11-최상층		16	36,920,803	155,079,197	192,000,000	19,2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57,600,000	
	82.1272 (A)	103동 5호	1층	1	41,238,910	150,761,090	192,000,000	19,2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57,600,000
2층			1	41,238,910	154,761,090	196,000,000	19,6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58,800,000	
3층			1	41,238,910	158,761,090	20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60,000,000	
4층			1	41,238,910	162,761,090	204,000,000	20,4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61,200,000	
5-10층			6	41,238,910	167,761,090	209,000,000	20,90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62,700,000	
11-최상층			4	41,238,910	172,761,090	214,000,000	21,4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64,200,000	
104동 5호		1층	1	41,238,910	144,761,090	186,000,000	18,6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55,800,000	
		2층	1	41,238,910	152,761,090	194,000,000	19,4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58,200,000	
		3층	1	41,238,910	160,761,090	202,000,000	20,2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60,600,000	
		4층	1	41,238,910	166,761,090	208,000,000	20,8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62,400,000	
		5-10층	6	41,238,910	171,761,090	213,000,000	21,3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1-최상층	5	41,238,910	176,761,090	218,000,000	21,8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65,400,000	
82.5343 (B)	103동 3,4호	1층	2	41,443,329	158,556,671	20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60,000,000	
		2층	2	41,443,329	161,556,671	203,000,000	20,30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60,900,000	
		3층	2	41,443,329	164,556,671	206,000,000	20,6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61,800,000	
		4층	2	41,443,329	167,556,671	209,000,000	20,90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62,700,000	
		5-10층	12	41,443,329	171,556,671	213,000,000	21,3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1-최상층	16	41,443,329	175,556,671	217,000,000	21,700,000	32,550,000	32,550,000	32,550,000	32,550,000	65,100,000	
	104동 3,4호	1층	2	41,443,329	161,556,671	203,000,000	20,30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60,900,000	
		2층	2	41,443,329	164,556,671	206,000,000	20,6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61,800,000	
		3층	2	41,443,329	167,556,671	209,000,000	20,90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62,700,000	
		4층	2	41,443,329	170,556,671	212,000,000	21,2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63,600,000	
		5-10층	12	41,443,329	174,556,671	216,000,000	21,6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11-최상층	16	41,443,329	178,556,671	220,000,000	22,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66,000,000	

84.533	103동 1,2호	1층	1	42,446,946	164,553,054	207,000,000	20,70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62,100,000
		2층	2	42,446,946	166,553,054	209,000,000	20,90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62,700,000
		3층	2	42,446,946	168,553,054	211,000,000	21,10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63,300,000
		4층	2	42,446,946	170,553,054	213,000,000	21,3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5-10층	12	42,446,946	173,553,054	216,000,000	21,6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11~최상층	16	42,446,946	176,553,054	219,000,000	21,90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65,700,000
	105동 1,2호	1층	2	42,446,946	169,553,054	212,000,000	21,2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63,600,000
		2층	2	42,446,946	171,553,054	214,000,000	21,4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64,200,000
		3층	2	42,446,946	173,553,054	216,000,000	21,6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4층	2	42,446,946	175,553,054	218,000,000	21,8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65,400,000
		5-10층	12	42,446,946	178,553,054	221,000,000	22,10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66,300,000
		11~최상층	14	42,446,946	181,553,054	224,000,000	22,4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 상기 금액은 플러스옵션(발코니확장 등) 제외 금액임.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 2]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김해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동·호수를 산정하였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리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에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장애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이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대지확정측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지면적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시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3.3058 또는 형별면적(㎡) × 0.3025)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법령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공급

• 공통사항

구 분		일자	시간	장소
일반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신청일시	2011.07.05(화)	10:00 ~ 14:00	당사 건본주택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당첨자 선정/공고	2011.07.05(화)	16:00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해당 청약신청 일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셔야 함.

• 당첨자 추첨일시 및 장소: 2011.07.05 (화) / 당사 건본주택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 특별공급, 수도권이외지역 건립되는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순으로 추첨함.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4항]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 할 예정임)

• 계약체결일: 2011.07.20.(수) - 2011.07.22.(금)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함. 또한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첨자로 간주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수 있음.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1)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27세대 / 건설량의 10%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6.30) 현재 김해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입주자저축(청약자격 요건) -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은 제외

①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5항:27세대 / 건설량의 10%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5항]에 해당하는 자[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근무자 및 기업종사자(지식경제부 세부기준 지원대상 기업)]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6.30) 현재 김해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①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12세대/건설량의 5%이내)

※2010년 10월 8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수가 기존 건설량의 3%이내에서 5% 이내로 변경되었음.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6.30)현재 김해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 20세미만의 직계 자녀 3명이상을 둔 세대주

①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 : 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제7항:27세대/건설량의 10%이내)

구 분	내 용
공급 대상자격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6.30.) 현재 김해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혼인가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을 말한다)의 100% 이하인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p> <p>※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통계청 고시)</p> <p>- 단독별이: 3인이하 - 4,007,671원이하, 4인 - 4,447,007원이하, 5인 이상 - 4,709,765원 이하</p> <p>- 맞벌이: 3인이하 - 4,809,205원이하, 4인 - 5,336,408원이하, 5인 이상 - 5,651,718원 이하</p>
입주자 저축 (청약자격 요건)	<p>① 청약예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p> <p>② 청약부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p>
청약 순위	<p>1순위: 혼인가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p> <p>2순위: 혼인가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p>
동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p>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신청자 중 규칙 제4조1항에 따라 예정지역 및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p> <p>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p> <p>3. 미성년인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p>※상기 청약순위의 출산은 재혼한 경우에는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p>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제13항:9세대/건설량의 3%이내)

•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1.06.30.)일 현재 김해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①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④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부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가점점수 산정기준표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별표 1 준용함)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소유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하며,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6)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주택형(전용면적)	계	63.5015㎡	65.5418㎡	73.5277㎡	82.1272(A)㎡	82.5343(B)㎡	84.5330㎡
일반 특별공급(10%)	27	3	3	6	2	7	6
수도권이외지역건립되는 특별공급(10%)	27	3	3	6	2	7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5%)	12	1	1	3	1	3	3
신혼부부 특별공급(10%)	27	3	3	6	2	7	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3%)	9	1	1	2	1	2	2
계	102	11	11	23	8	26	23

7)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신청 시 (배우자포함)	일반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분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해당기관의 인정서 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청약예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철거민,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은 제외 - 단독세대 및 배우자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수도권 이외지역 건립되는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인정서 1통 - 단독세대 및 배우자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청약예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본인 발급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발급기준 - 출생일자 확인 필요한 기본증명서: 자녀발급기준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및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 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청약예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분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청약예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제3차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대리 신청자의 인감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06.30)현재 김해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20세이상(세대주인 경우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나 2009.04.01 ~ 2012.03.31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적용기간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민영주택에 한하여 청약 가능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 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1)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예금
민영주택	김해시 (1년이상 거주자)	1순위	가점제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공통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대상자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불가 (추첨제 1순위 대상으로 자동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판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전 주택형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 청약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공통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청약자는 가점/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전 주택형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2순위	공통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 가능)
			전 주택형	
		3순위	전 주택형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 가점제 자격신청은 1, 2순위에만 해당되며, 가점제 신청자 중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2)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초과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과 관련, 별표 1의 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의거 85㎡초과 102㎡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수 있다.

3)청약 접수기간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특별공급	김해시 (1년이상거주자)	2011.07.05 (화)	-장소: 당사 견본주택 -시간:10:00~14:00	-일시: 2011.07.15 (금) -장소: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1순위		2011.07.06 (수)	-청약관련예금 가입은행 인터넷청약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접수시간:08:00~17:30	
	2순위		2011.07.07 (목)		
	3순위		2011.07.08 (금)	-경남은행 본.지점 -접수시간:09:00~16:00	

※청약 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경남은행에서만 가능.)

※2009. 04.0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동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4)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 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 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1994.0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최초 청약 신청 전까지 신청 가능 전용면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주택규모로 변경이 가능함.

▣ 신청접수 방법

1)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 / 수도권외지역 건립되는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건보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1순위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85㎡이하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를 적용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85㎡이상 주택형의 경우 일반 공급 대상 주택수의 50% 가점제를 적용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시 미달 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3순위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3) 청약신청 접수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1,2순위 일반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공급함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 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 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구 분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 주 택 기 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가입자본인)	5	4 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명	10	5 명	30	
		2 명	15	6 명	35	
		3 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총 점			84점 만점기준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3)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p>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4) 감점 산정기준

감점 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 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셔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 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 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 보유 특례)
- ①[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②[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 공급 신청시 구비 사항(참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1,2 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교부, 3순위: 경남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2 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 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약신청금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가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제 청약자의 경우 무주택세대주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무주택세대주 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3자 대리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건분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거주지, 주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용도란은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경남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만 가능)

구 분	전주택형	비 고
청약신청금	100 만원	가능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김해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 기간: 당첨일 발표 익영업일(2011.07.18)이후 평일.(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청약접수한 은행 본/지점)
- 구비 서류: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감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 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상기 구비 서류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경남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경남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 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다음 날 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제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치 않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자 입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 •당첨자를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주택형별로 동·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 기 바람.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 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방식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모델하우스)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 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 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 할 계획이며, 추후 별도 통보함.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신청·당첨시 모두 무효처리 되고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 2011.07.15 ~ 2011.07.24(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1599-9999(서비스코드: 9 → 1 → 3)	금융결제원 ☎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 2011.07.15. ~ 2011.07.24(10일간)	
휴대폰 모바일	이용방법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이용기간	• 2011.07.15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2011.07.20(수) ~ 2011.07.22(금) (시간 10:00 ~ 16:00까지)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아래 계좌로 직접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당사 건본주택에서 계약체결.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경남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망.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경남은행	679-32-0000180	(주)한국토지신탁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본인 계약체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 계약금 김해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세대주, 만 20세 이상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 배우자와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서약서 및 공급계약체결관련 각서(계약장소에 비치)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거주지, 주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계약조건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자의 경우 각 당첨 구분(가점제, 추첨제)의 주택소유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함.
- 행정 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 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음(2009.4.1.재 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 38조 제1호 제 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으로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창호,가구,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단,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일괄 선택	바닥재	<온돌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복도, <타일, 석재>현관, <장판>침실,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 공간 바닥, 발코니바닥 배수구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
	벽,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장식벽(타일,시트지), 주방벽타일, 몰딩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 천장 :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우물천정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욕실 등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 석재,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선, 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TV, 주방수전, 싱크볼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 전기, 통신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수전, 발코니수전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슬리브(거실)
창호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 도어락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방화문, 대피 공간 방화문	

•마이너스 옵션금액

주택형별 (전용면적기준)	63.5015㎡	65.5418㎡	73.5277㎡	82.1272(A)㎡	82.5343(B)㎡	84.5330㎡
마이너스 옵션 금액	15,641,582원	16,092,045원	17,935,268원	19,953,209원	20,152,031원	20,541,963원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자재수급 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 3조 규정의거 입주 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과 비닐장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서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안내 <본 아파트는 회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함>

구분	용자기관	비고
금융기관	경남은행	중도금(분양가의 60%)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함 ※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고지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방법

- 입주 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13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1개소), 문고, 노인정, 경비실, 주차장 등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

▣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관련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08.10.29개정·시행)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아래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부가세 포함)

주택형별 (전용면적기준)	63.5015㎡	65.5418㎡	73.5277㎡	82.1272(A)㎡	82.5343(B)㎡	84.5330㎡
발코니 확장 공사비	7,278,700	7,490,340	8,348,340	9,286,420	9,380,800	9,560,980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경남은행	679-32-0000180	(주)한국토지신탁	

- 주택형별로 각 세대별 확장부위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가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소비자 관리부족으로 발생한 과실분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소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본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규칙 제16조 주택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을 공개함 (단위 : 금액-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합 계		61,070,000,000	간 접 비	설계비	911,561,000
택 지 비		11,824,364,612		감리비	956,182,790
공 사 비	직접공사비	30,058,791,974		부대비	10,017,806,555
	간접공사비	3,605,344,026	그 밖의 비용	기타비	3,695,949,043

※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전 추정가격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비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11,411,933,600원	
한국감정원	11,340,250,600원	

■ 기타 유의사항

- 선 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에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미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위치모형, 단위세대UNIT 및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CG 등 카다로그, 팸플렛, 각종 인쇄물 등에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재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시설(보육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경관조명의 설치/사용할 경우 공용전기료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화(또는 온돌)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천연대리석 시공부위는 원석(석회암)을 가공하여 사용하므로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공극과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음.
-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등에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음.
- 104동 1,2호라인 저층세대는 관리동 옥상휴게소, 104동 3,4호 전면에 휴게소가 위치함에 따라 저층세대는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103동 1호라인은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부의 경우 차량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등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세대모형이 설치되는 일부 타입의 경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실질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수기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배관이 노출 및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일부 평형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배치도를 확인하여야 함.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리회사	감리금액(VAT 별도)	비 고
건 축	(주)신성이앤써건축사사무소	755,182,790원	VAT 별도
전 기	(주)진일기술단	145,000,000원	VAT 별도
통신, 소방	(주)세종기술단	56,000,000원	VAT 별도

■ 연대 보증사: 대한주택보증(주)

- 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42,749,000,000원	제 01282011-101-0004700 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

- 보 증 기 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 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의 범위: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및 잔여 입주금등의 납부
 -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 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흙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로 문의 바랍니다(02-3770-6300)

▣ **주택법 제21조 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규정**

• 주택성능등급 등급표

성능부분	세부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환경	에너지성능	3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주)한국토지신탁	양우건설(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3-2
등록번호	110111-1258220	110111-0618194

▣ **건본주택 위치**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460-5번지 (TEL: 055-328-2500 / FAX: 055-328-5500)